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8180
----------	-------

발의연월일 : 2026. 4. 8.

발 의 자 : 백혜련 · 이수진 · 장종태
홍기원 · 박용갑 · 용혜인
박지원 · 진선미 · 안태준
황정아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원이 장애인학대관련범죄 등으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을 선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보건복지부의 「2024년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장애 등 의지를 피력하기 어려운 정신적 장애인의 학대 피해가 신체적 장애인의 학대 피해보다 약 4배 많은 것으로 나타남. 장애인학대관련범죄가 의사소통과 자기방어 능력이 낮은 대상에게 집중된다는 점은 아동학대범죄의 특성과 유사한 것으로 보이므로 장애인학대관련범죄자의 취업제한 기관을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에 따른 아동관련기관으로까지 확대하여 장애인학대관련범죄 전과자와 아동의 접촉을 차단함으로써 장애인과 아동을 함께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장애인학대관련범죄자의 취업제한 기관에 「아동복지법」 제 29조의3에 따른 아동관련기관을 추가함으로써 범죄 재범의 위험으로부터 장애인 및 아동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3제1항제5호 및 같은 항 제14호부터 제28호까지 신설).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의3제1항제5호 중 “수행기관”을 “수행기관, 같은 법 제44조의2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 같은 법 제48조에 따른 가정위탁센터”로 하고, 같은 항에 제14호부터 제2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의 어린이집,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같은 법 제26조의2에 따른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
15.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
16. 「청소년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시설, 청소년단체
17. 「청소년활동진흥법」 제2조제2호의 청소년활동시설
18.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제1항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같은 법 제30조의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및 같은 법 제31조 각 호의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치료재활센터
19.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의 청소년 보호·재활센터
20.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21.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학원 및 같은 조 제2호의 교습소 중 아동의 이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학원과 교습소로서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학원·교습소

2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의 한부모가족복지시설
23. 「아동복지법」 제45조의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같은 법 제53조의2의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운영하는 법인(대표자 및 아동을 직접 대면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한정한다)
24.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원
25. 「민법」 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설립 허가를 받아 아동인권, 아동복지 등 아동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대표자 및 아동을 직접 대면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한정한다)
26. 「아이돌봄 지원법」 제11조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27. 「모자보건법」 제15조의18에 따른 산후조리도우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모집하거나 채용하는 기관(직접 산후조리도우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에 한정한다)
28. 「모자보건법」 제15조에 따른 산후조리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애인학대관련범죄자 취업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을 범하고

이 법 시행 당시 확정판결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

15.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의 유치원

16. 「청소년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시설, 청소년단체

17. 「청소년활동진흥법」 제2
조제2호의 청소년활동시설

18.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
9조제1항의 청소년상담복지센
터, 같은 법 제30조의 이주배
경청소년지원센터 및 같은 법
제31조 각 호의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치
료재활센터

19. 「청소년 보호법」 제35조
의 청소년 보호·재활센터

20.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및 같은 법 제2
8조에 따라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21.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
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학원 및 같은 조 제2
호의 교습소 중 아동의 이용
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학원과

<신 설>

교습소로서 교육부장관이 지
정하는 학원·교습소

2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
조의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신 설>

23. 「아동복지법」 제45조의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같은
법 제53조의2의 학대피해아동
쉼터를 운영하는 법인(대표자
및 아동을 직접 대면하는 업
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한정하
다)

<신 설>

24.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
한 법률」에 따른 소년원

<신 설>

25. 「민법」 제32조에 따라 보
건복지부장관의 설립 허가를
받아 아동인권, 아동복지 등
아동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대표자 및 아동을
직접 대면하는 업무에 종사하
는 사람에 한정한다)

<신 설>

26. 「아이돌봄 지원법」 제11
조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제
공기관

<신 설>

27. 「모자보건법」 제15조의18
에 따른 산후조리도우미 서비
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모집하

<신 설>

② ~ ⑬ (생 략)

거나 채용하는 기관(직접 산
후조리도우미 서비스를 제공
하는 사람에 한정한다)

28. 「모자보건법」 제15조에
따른 산후조리원

② ~ ⑬ (현행과 같음)